###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4710 제출연월일: 2024. 10. 16.

제 출 자:정 부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'1개월 이상'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, 앞으로는 '6개월 이상'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#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의14제3호 중 "1개월 이상"을 "6개월 이상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14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의14(지원센터의 지정취소)	제15조의14(지원센터의 지정취소)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	
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	
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	
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	
취소하여야 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	3
유 없이 <u>1개월 이상</u> 수행하지	<u>6개월 이상</u>
아니한 경우	